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내용

❍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 만3~5세 전년대비 3.5%(10,000원) 인상

❍ 특별활동비

– 18개월이상 영유아 요건 충족시 현장학습비·행사비·특성화비(67천원), 특별활동비(49천원) 별도 수납가능

❍ 기타 필요경비 한도액 인상

– 현장학습비·행사비·특성화비

· (0-1세) 시설유형별 수납한도액 동일하게 변경(75천원)

· (2-5세) 시설유형별 수납한도액 5천원 인상(67천원)

※ 18개월이상 특별활동비 참여 영유아 : 2-5세 수납한도액 준용

– 차량운행비 인상 : 5천원 인상

※ 모든 시설 유형에 동일한 수납한도액 적용

❍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신설)

– 2017년 인천시 신규사업 반영

❍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료 수납 한도액 인상

– 2018년 수강료 수납 한도액 1,834,000원(34,000 1.9%↑, '17. 1,800,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기준

–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명확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 준용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신설), 대체조리원 지원(신설)

– 2018년 인천시 신규사업 반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장기임차방식 국공립 전환 등

❍ 인천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일부 변경

– 지원금액 : (0세반 1, 1세반 1) 1,763천원 → 1,890천원
(0세반 2) 2,027천원 → 2,140천원

– 인천형 지정 운영 :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시 명시
통합보육시스템에 인천형반 표기
변경시 운영위원회 사전보고 및 군구 사전승인 확행

❍ 투명한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운영

– 공동구매업체 개소수 : 5개 업체 이상 → 20개 업체 이상

❍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확대 및 기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기준 등 개선 등

□ 비교표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td colspan="4">Ⅲ.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td></tr>
<tr><td>1.
보육료
수납
한도액</td><td>가. 보육료 수납 한도액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어린이집</th><th>가정어린이집</th></tr>
<tr><td>0 세</td><td>정부지원단가</td><td>정부지원단가</td><td>정부지원단가</td></tr>
<tr><td>1 세</td><td>정부지원단가</td><td>정부지원단가</td><td>정부지원단가</td></tr>
<tr><td>2 세</td><td>정부지원단가</td><td>정부지원단가</td><td>정부지원단가</td></tr>
<tr><td>3 세</td><td>220,000</td><td>294,000</td><td>294,000</td></tr>
<tr><td>4세</td><td>220,000</td><td>280,000</td><td>280,000</td></tr>
<tr><td>5세</td><td>220,000</td><td>280,000</td><td>280,000</td></tr>
</table>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방과후 보육료</td><td>110,000</td><td>140,000</td><td>140,000</td></tr>
</table></td><td>가.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어린이집</th><th>가정어린이집</th></tr>
<tr><td>0 세</td><td rowspan="3">정부지원단가</td><td rowspan="3">정부지원단가</td><td rowspan="3">정부지원단가</td></tr>
<tr><td>1 세</td></tr>
<tr><td>2 세</td></tr>
<tr><td>3 세</td><td>220,000</td><td>304,000</td><td>304,000</td></tr>
<tr><td>4세</td><td>220,000</td><td>290,000</td><td>290,000</td></tr>
<tr><td>5세</td><td>220,000</td><td>290,000</td><td>290,000</td></tr>
</table>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방과후 보육료</td><td>110,000</td><td>145,000</td><td>140,000</td></tr>
</table></td><td>2018.
3. 1
적용</td></tr>
<tr><td>2.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td><td>2. 그 밖의 필요경비 종류 및 수납한도액
가. 수납한도액
1) 그 밖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단위 : 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반편성
연령</th><th>수납
주기</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 colspan="2">특별활동비
(2세~5세)</td><td>2-5세</td><td>1개월</td><td>월
44,000</td><td>월
49,000</td><td>월
49,000</td></tr>
<tr><td rowspan="5">기타
필요
경비</td><td>입학(새학년)준비금</td><td>0-5세</td><td>1년</td><td>90,000</td><td>100,000</td><td>100,000</td></tr>
<tr><td rowspan="2">현장학습비
및 행사비</td><td>0-1세</td><td>3개월</td><td>월
60,000</td><td>월
70,000</td><td>월
70,000</td></tr>
<tr><td>2-5세</td><td>3개월</td><td>월
62,000</td><td>월
62,000</td><td>월
62,000</td></tr>
<tr><td>차량운행비</td><td>-</td><td>3개월</td><td>월
15,000</td><td>월
15,000</td><td>월
15,000</td></tr>
<tr><td>아침,저녁
급식비</td><td>-</td><td>1개월</td><td>1식
1,000</td><td>1식
1,000</td><td>1식
1,000</td></tr>
</table>
※ 정부지원시설 중 차량운행비 수납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장애전담, 영아전담에 한함

나. 필요경비 항목별 세부내역
1) 특별활동비
○ 만1세 중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특별활동(시도특성화)(이하 생략)
○ <신 설></td><td>2. 그 밖의 필요경비 종류 및 수납한도액
가. 수납한도액
1) 그 밖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단위 : 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반편성
(연령)</th><th>수납
주기</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 colspan="2">특별활동비</td><td>2-5세</td><td>1개월</td><td>월
44,000</td><td>월
49,000</td><td>월
49,000</td></tr>
<tr><td rowspan="6">기타
필요
경비</td><td>입학(새학년)준비금</td><td>0-5세</td><td>1년</td><td>100,000</td><td>100,000</td><td>100,000</td></tr>
<tr><td>현장학습비·행사비</td><td>0-1세</td><td>3개월</td><td colspan="3">월
75,000</td></tr>
<tr><td>18개월 이상 영아(만1세) 중 특별활동 참여자</td><td>18개월
이상</td><td>3개월</td><td colspan="3">월
67,000</td></tr>
<tr><td>현장학습비·
행사비
·시도특성화비용
(개인용교재교구비)</td><td>2-5세</td><td>3개월</td><td colspan="3">월
67,000</td></tr>
<tr><td>차량운행비</td><td>-</td><td>3개월</td><td colspan="3">월
20,000</td></tr>
<tr><td>아침,저녁
급식비</td><td>-</td><td>1개월</td><td colspan="3">1식
1,000</td></tr>
</table>
※ 특별활동비 수납가능한 연령은 요건충족한 18개월 이상의 영유아 포함

나. 필요경비 항목별 세부내역
1) 특별활동비
○ <삭 제>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td><td>2018.
3. 1
적용</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
<td></td>
<td>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생략)
- 통상적 보육활동에-------(생략)

- 만1세반의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특별활동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월7만원(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제외, 민간가정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만1세반 중 18개월 이상 영아가 특별활동(시도특성화)을 실시할 경우「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수납한도액 7만원과 특별활동비 4만 9천원을 각각 수납하는 행위 엄금
- 군구에서는 18개월 이상 영아의 특별활동 실시 요령과 비용 수납 방법을 관내 어린이집에서 준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3)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생략)
4)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학습발표회) 행사에 소요되는 재료대 등 비용과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 및 액자 제작비, 의복비 등

5) 차량운영비(생략)
6) 아침·저녁급식비(생략)
7) 시도 특성화 비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연령 반</th><th>수납 주기</th><th>정부지원 시설</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 rowspan="2">기타 필요 경비</td><td>현장학습비·행사비</td><td>만0세~만1세</td><td rowspan="2">분기 (3개월)</td><td>월 60,000</td><td>월 70,000</td><td>월 70,000</td></tr>
<tr><td>현장학습비.행사비.시도 특성화비용</td><td>만2세~만5세</td><td>월 62,000</td><td>월 62,000</td><td>월 62,000</td></tr>
</table>
- 시도 특성화 비용은 수납 한도액에서 15,000원 범위 내 사용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특성화 실시 : 만1세반 기준 적용
• 만 1세반 현장학습비 • 행사비 • 시도 특성화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 행사비 • 시도특성화비용으로 구분하여 수납

라. 행정사항
❍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수납 시 부모
</td>
<td>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7-134호, 2017.6.26.)
「영유아보호법 위반 보조금반환명령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결과 반영
➔18개월 이상의 영유아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편성과 상관없이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와 특별활동비 각각 수납 가능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현행과 같음)
❍ 통상적 보육활동에--------(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장학습비·행사비
❍ 현장학습비(현행과 같음)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
4) 차량운행비(현행과 같음)
5) 아침·저녁급식비(현행과 같음)
6) 인천시 특성화 비용(개인용 교재교구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연령 반</th><th>수납 주기</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 rowspan="3">기타 필요 경비</td><td colspan="2">현장학습비.행사비</td><td>만0세~만1세</td><td rowspan="3">분기 (3개월)</td><td colspan="3">월 75,000</td></tr>
<tr><td>현장학습비.행사비.시도 특성화비용 (개인용교재교구비)</td><td>18개월 이상</td><td colspan="3">월 67,000</td></tr>
<tr><td>현장학습비.행사비.시도 특성화비용 (개인용 교재교구비)</td><td>만2세~만5세</td><td colspan="3">월 67,000</td></tr>
</table>
- (현행과 같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특성화 실시를 할 때에는 현장학습비·행사비·시도특성화비용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행정사항
❍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수납 시 부모 동의 및
</td>
<td></td>
</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td></td><td>동의서(서식①, 서식①-1) (생략)</td><td>조사서(서식①) (현행과 같음)</td><td></td></tr>
<tr><td>3.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td><td>
다. 적용내용
❍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생략)

❍ 반별 탄력편성 기준
<table>
<tr><th>반별 정원</th><th>만0세</th><th>만1세</th><th>만2세</th><th>만3세</th><th>만4세 이상</th></tr>
<tr><td>원 칙</td><td>3명</td><td>5명</td><td>7명</td><td>15명</td><td>20명</td></tr>
<tr><td>탄력편성 가능인원</td><td>-</td><td>1명</td><td>2명</td><td>3명</td><td>3명</td></tr>
</table>
※ (생략)

* 〈신설〉

** 〈신설〉

❍ 편성조건 (생략)
❍ 〈신설〉

❍ 〈신설〉
</td><td>
다. 적용내용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 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 반별 탄력편성 기준
<table>
<tr><th>반별 정원</th><th>만0세</th><th>만1세</th><th>만2세</th><th>만3세</th><th>만4세 이상</th></tr>
<tr><td>원 칙</td><td>3명</td><td>5명</td><td>7명</td><td>15명</td><td>20명</td></tr>
<tr><td>탄력편성 가능인원</td><td>-</td><td>1명</td><td>2명</td><td>3명</td><td>3명</td></tr>
</table>
※ (현행과 같음)

* (예) 만1세반 2개, 만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만1세 아동 10명 모두가 만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만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 편성 가능
** (예) 3월에 만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만3세 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잔류 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기준을 초과하여 반 편성 가능
❍ 〈삭제〉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 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td><td>2018.
3. 1
적용</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td></td><td>○ 〈신설〉</td><td>※ 만1세반은 116,400원 이상, 만2세반은 96,3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td><td></td></tr>
<tr><td colspan="4">Ⅳ. 보육료 지원</td></tr>
<tr><td>1.
지원원칙</td><td>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td><td>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td><td>2018
3. 1
적용</td></tr>
<tr><td>2.
법정
저소득층
등
그 밖의
필요경비</td><td>다. 지원기준
(단위 : 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반편성 연령</th><th>수납 주기</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 colspan="2">특별활동비 (2세-5세)</td><td>2-5세</td><td>1개월</td><td>월 44,000</td><td>월 49,000</td><td>월 49,000</td></tr>
<tr><td rowspan="3">기타 필요경비</td><td rowspan="2">현장학습비 및 행사비</td><td>0-1세</td><td>3개월</td><td>월 60,000</td><td>월 70,000</td><td>월 70,000</td></tr>
<tr><td>2-5세</td><td>3개월</td><td>월 62,000</td><td>월 62,000</td><td>월 62,000</td></tr>
<tr><td>차량운행비</td><td>-</td><td>3개월</td><td>월 15,000</td><td>월 15,000</td><td>월 15,000</td></tr>
</table>
※ 정부지원 시설 중 차량운행비 지원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장애전담, 영아전담에 한함</td><td>다. 지원기준
(단위 : 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반편성 (연령)</th><th>수납 주기</th><th>정부지원 어린이집</th><th>민간 어린이집</th><th>가정 어린이집</th></tr>
<tr><td colspan="2">특별활동비</td><td>2-5세</td><td>1개월</td><td>월 44,000</td><td>월 49,000</td><td>월 49,000</td></tr>
<tr><td rowspan="4">기타 필요경비</td><td>현장학습비·행사비</td><td>0-1세</td><td>3개월</td><td colspan="3">월 75,000</td></tr>
<tr><td>18개월 이상 영아이중 특별활동 참여자</td><td>18개월 이상</td><td>3개월</td><td colspan="3">월 67,000</td></tr>
<tr><td>현장학습비·행사비 ·시도특성화비용 (개인용교재교구비)</td><td>2-5세</td><td>3개월</td><td colspan="3">월 67,000</td></tr>
<tr><td>차량운행비</td><td>-</td><td>3개월</td><td colspan="3">월 20,000</td></tr>
</table>
※ 특별활동비 수납가능한 연령은 요건충족한 18개월 이상의 영유아 포함</td><td>2018.
3. 1
적용</td></tr>
<tr><td>3.
법정
저소득층</td><td>나. 지원대상
○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P90)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아동</td><td>나. 지원대상
○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88P)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아동</td><td>2018.
3. 1</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
<td>아동
민간시설
이용 차액
보조</td>
<td>다. 지원기준
○ <신설>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만3세</th><th>만4세</th><th>만5세</th></tr>
<tr><td>민간
어린이집</td><td>74,000</td><td>60,000</td><td>60,000</td></tr>
<tr><td>가정
어린이집</td><td>74,000</td><td>60,000</td><td>60,000</td></tr>
</table>
※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시설은
만3세 148천원, 4~5세 120천원 지원

- <신설>

- <신설></td>
<td>다. 지원기준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차액
(부모부담보육료) 100% 지원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만3세</th><th>만4세</th><th>만5세</th></tr>
<tr><td>민간
어린이집</td><td>84,000</td><td>70,000</td><td>70,000</td></tr>
<tr><td>가정
어린이집</td><td>84,000</td><td>70,000</td><td>70,000</td></tr>
</table>
※ <삭제>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기준
· 청정무상급식지정시설:<3세>46,000원, <4~5세> 32,000원
· 청정무상급식미지정시설:<3세>46,000원, <4~5세> 32,000원
※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다르게 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 보조금 38,000원은 별도 보조
-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시설은 만3세 168천원, 4~5세 140천원 지원
· 청정무상급식지정시설:<3세> 92,000원, <4~5세> 64,000원
· 청정무상급식미지정시설 <3세>92,000원, <4~5세> 64,000원
※ 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 보조금 76,000원은 별도 보조</td>
<td>적용</td>
</tr>
<tr>
<td>4.
법정
저소득층
아동
24시
보육료</td>
<td>나. 지원대상
○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P90)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아동 중 24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다. 지원기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부담금(50%) 지원
(단위 : 원)
<table>
<tr><th>만0세</th><th>만1세</th><th>만2세</th><th>만3세</th><th>만4세</th><th>만5세</th></tr>
<tr><td>215,000</td><td>189,000</td><td>156,500</td><td>110,000</td><td>110,000</td><td>110,000</td></tr>
</table></td>
<td>나. 지원대상
○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88P)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아동 중 24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다. 지원기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부담금(50%) 지원
(단위 : 원)
<table>
<tr><th>만0세</th><th>만1세</th><th>만2세</th><th>만3세</th><th>만4세</th><th>만5세</th></tr>
<tr><td>220,500</td><td>194,000</td><td>160,500</td><td>110,000</td><td>110,000</td><td>110,000</td></tr>
</table></td>
<td>2018.
1. 1.
적용</td>
</tr>
<tr>
<td>5.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
육료 지원</td>
<td><신 설></td>
<td>가.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중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나.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다. 지원기준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차액
(부모부담보육료) 100% 지원</td>
<td>2018.
3. 1.
적용</td>
</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td></td><td></td><td>(단위 : 원)
<table><tr><th>구 분</th><th>만3세</th><th>만4세</th><th>만5세</th></tr><tr><td>민간 어린이집</td><td>84,000</td><td>70,000</td><td>70,000</td></tr><tr><td>가정 어린이집</td><td>84,000</td><td>70,000</td><td>70,000</td></tr></table>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기준
· 청정무상급식지정시설:<3세> 46,000원, <4~5세> 32,000원
· 청정무상급식미지정시설:<3세>46,000원, <4~5세> 32,000원
※ 다자녀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다르게 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 보조금 38,000원은 별도 보조
-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시설은 만3세 168천원, 4~5세 140천원 지원
· 청정무상급식지정시설:<3세> 92,000원, <4~5세> 64,000원
· 청정무상급식미지정시설 <3세>92,000원, <4~5세> 64,000원
※ 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 보조금 76,000원은 별도 보조

라. 지원원칙
❍ 월별로 지원하며, 기타 사항은 2016년 아이행복카드(보육료지원)사업 업무편람(P244~528, 지방정부 특수시책 아이행복카드 적용)을 준용한다.
❍ 지원시점 : 2018. 3월부터

마. 지원절차
❍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의 보육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td><td></td></tr>
<tr><td colspan="4">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전문성 향상</td></tr>
<tr><td>1.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td><td>나. 지원조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되,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생략)
※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지원대상자중 출산휴가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우개선비 지급</td><td>나. 지원조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되,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추가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지원대상자중 출산휴가자는 월 15일이상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우개선비 지급</td><td>2018. 1. 1. 적용</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td></td><td>
마. 지원절차
❍ 각 시설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생략)

사. 평가인증과의 관계
❍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시설은 처우개선비의 일부(80%)만 지원하되, 미지급분(20%이상)은 원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 지원기준
표(생략)
※ 어린이집의 최소부담액은 30,000원으로 한다.
❍ 원장이 20%이상 지급에 대한 ----------, 지도점검시 미지급한 사항이 확인되면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중지한다.

❍ 신규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지급은--(생략)
❍ 〈신설〉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처우개선비 일부(20%이상) 지급 중지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한다.
</td><td>
마. 지원절차
❍ 각 시설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것을---(현행과 같음)

사. 평가인증과의 관계
❍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시설은 처우개선비의 일부(80%)만 지원하되, 미지급분(20%이상, 최소 30,000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 지원기준
표(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원장)의 최소부담액은 30,000원으로 한다.
❍ 어린이집(원장)이 20%이상 지급에 대한 ----, 지도점검시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월의 익월 부터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지한다.
❍ (현행과 같음)

❍ 평가인증이 취소될 경우,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일부(20%, 최소 30,000원)를 평가인증 결과 발표 월의 익월부터 중지한다.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처우개선비 일부(20%이상, 최소 30,000원)를 지급 중지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한다.
</td><td></td></tr>
<tr><td>2.
보육교사
교육원</td><td>
가.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단위 : 명)
<table>
<tr><th>연번</th><th>교육원명</th><th>소 재 지</th><th>교육정원</th><th>전화번호</th><th>위탁일</th></tr>
<tr><td></td><td>2 개소</td><td></td><td>500</td><td></td><td></td></tr>
<tr><td>1</td><td>인천KCEM</td><td>남구 주안동 395-21</td><td>300</td><td>867-5001</td><td>'94.06.11</td></tr>
<tr><td>2</td><td>성산효대학부설</td><td>남동구 구월남로 126</td><td>200</td><td>433-1996</td><td>'98.03.23</td></tr>
</table>
※ 인천보육교사교육원은 2017년 2월까지 휴지기간으로 3월 폐지 예정

다. 수강료(등록금) 수납
❍ 2017년 수강료 수납 한도액 : 1,800,000원
</td><td>
가.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단위 : 명)
<table>
<tr><th>연번</th><th>교육원명</th><th>소 재 지</th><th>교육정원</th><th>전화번호</th><th>위탁일</th></tr>
<tr><td></td><td>2 개소</td><td></td><td>500</td><td></td><td></td></tr>
<tr><td>1</td><td>인천KCEM</td><td>남구 주안동 395-21</td><td>300</td><td>867-5001</td><td>'94.06.11</td></tr>
<tr><td>2</td><td>성산효대학부설</td><td>남동구 구월남로 126</td><td>200</td><td>433-1996</td><td>'98.03.23</td></tr>
</table>
※ 〈삭제〉

다. 수강료(등록금) 수납
❍ 2018년 수강료 수납 한도액 : 1,834,000원
</td><td>2018.
3. 1.
적용</td></tr>
<tr><td colspan="4">Ⅵ.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관리</td></tr>
<tr><td>2.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td><td>
2.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나. 군·구 조치사항
❍ 정부지원어린이집 중 개인수탁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중단 전월에 새로운 원장의 임면 절차를 이행하며 법인 등이 수탁한 국.공립시설이나 기타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으로 부터 인건비가 전입될 경우에 한하여
</td><td>
2.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

나. 군·구 조치사항
❍ 정부지원어린이집 중 개인수탁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중단 전월에 새로운 원장의 임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법인 등이 수탁한 국.공립시설이나 기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수탁법인 등으로부터
</td><td>2018.
1. 1.
적용</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td></td><td>당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임면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에 새로운 원장을 임면하고 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td><td>인건비가 전입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원장의 임면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에 새로운 원장을 임면하고 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td><td></td></tr>
<tr><td>3.
특수보육 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td><td>다. 24시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⑩ 〈신설〉</td><td>다. 24시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⑩ 원장은 24시간 어린이집의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비상탈출구를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화재발생 등 비상탈출 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및 24시간 보육아동이 평소에 비상탈출 이동 동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td><td>2018. 1. 1. 적용</td></tr>
<tr><td>4.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td><td>다.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조리원을 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신설〉</td><td>다.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조리원을 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조리원인건비 지원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조리원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다만 2018.1.1.일 현재 상한 연령을 초과하여 근무중인 자에 대해서는 2018. 12. 31.일까지 지원한다.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td><td>2018. 1. 1. 적용</td></tr>
<tr><td>6.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td><td>6. <신설></td><td>6.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가. 사업목적(생략)
나.추진방향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급간식 질 관리
❍ 어린이집 급식단가 인상 및 재정지원 확대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재정지원을 통한 시설간 격차 해소
다.지원대상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사업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구로부터 지정받은 어린이집
라.재정지원 조건
❍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상으로 지정받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전전월 기준 급간식비 총액 중 공동구매 이용률이 70% 이상인 어린이집
❍ 전전월 기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출기준액 이상 집행한 어린이집
마. 아동 1인 지원액: (만0~2세) 10,000원/월
(만3~5세) 52,400원/월
<table><tr><th>구 분</th><th>만0~2세</th><th>만3~5세</th><th>비 고</th></tr><tr><td>계</td><td>10,000</td><td>52,400</td><td></td></tr></table></td><td>2018. 1. 1. 적용</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td></td><td></td><td>
<table>
<tr><td>부모부담보육료 중 급간식비</td><td>-</td><td>38,000</td><td></td></tr>
<tr><td>급간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td><td>10,000</td><td>14,400</td><td></td></tr>
</table>

바. 위반시 제재사항
○ (2회 이하) 주의 : 보조금 교부액 변동없음
○ (3회 이상) 1차 경고 : 단가인상 차액분 100% 미교부
○ (4회 이상) 2차 경고 : 1차 경고시와 동일 및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결과 군·구보고
○ (5회 이상) 지정취소 : 청정무상급식 신청 취소, (향후 1년간 신청 불가)
※ 2018년 6월까지 제재 없음

사. 기타사항
❍ 2018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매뉴얼(부록p126) 참조
</td><td></td></tr>
<tr><td>7.
대체
조리원
지원</td><td>7. <신설></td><td>
7. 대체조리원 지원

가. 사업목적(생략)

나. 지원우선순위
❍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등

다. 지원기준
○ 결혼 등 연가(주중 1~3일, 최대 5일), 긴급사유 발생시 지원
○ 연가, 병가 등 조리원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대체조리원 파견

라. 운영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채용하여 운영
- (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근무) 주 5일 근무
※ 대체조리원은 8시간 근무, 보조조리원은 4시간 근무
- (지원단가)
◦ 대체조리원 : 월 1,850천원
(교통비 5만원, 퇴직금,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2018. 1월부터 적용)
◦ 보조조리원 : 월 880천원
(교통비 5만원, 퇴직금,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2018. 1월부터 적용)

마. 유의사항
○ 대체조리원은 조리원의 법정연가 보장과 조리원 부재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td><td>2018. 1. 1. 적용</td></tr>
<tr><td colspan="4">Ⅶ. 공보육인프라 확충</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
<td>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td>
<td>(3) <u>무상임대방식의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u>
❍ <u>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군·구에서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시설</u>

(4) 지원규모
1) 국비 : 보건복지부 <u>2017년도</u> 보육사업안내에 의한다.
<u>○ 신축 : 개소당 330㎡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보육수요 및 부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최고 396㎡범위내에서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국비 최대 지원액 : 251,460천원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시설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최대지원액 : 251,460천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u>

2) 시 비
<table>
<tr><th>확충
사업명</th><th>지 원 기 준</th><th>비 고</th></tr>
<tr><td>신 축</td><td>사업비 범위내에서
군(구) 협의 예산지원</td><td></td></tr>
<tr><td>기존시설
매입및리
모델링</td><td>사업비 범위내에서
군(구) 협의 예산지원</td><td></td></tr>
<tr><td><u>공동주택
리모델링</u></td><td><u>최대지원액 : 50,000천원
/개소(국비포함)</u></td><td>국50,
시25,
군(구)25</td></tr>
</table>
</td>
<td>(3) <u>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u>
<u>❍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 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 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u>

(4) 지원규모
1) 국비 : 보건복지부 <u>2018년도</u> 보육사업안내에 의한다.
<u>○ 신축 : 개소당 561㎡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660㎡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최대 지원액 : 461,010천원(설계용역비 지원금액 포함)
- 지원단가 : 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기존시설 국공립 전환
-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최대지원액 : 461,010천원
○ 민간시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 110,000천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 210,000천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u>

2) 시 비
<table>
<tr><th>확충
사업명</th><th>지 원 기 준</th><th>비 고</th></tr>
<tr><td>신 축</td><td>사업비 범위내에서
군(구) 협의 예산지원</td><td></td></tr>
<tr><td>기존시설
매입및리
모델링</td><td>사업비 범위내에서
군(구) 협의 예산지원</td><td></td></tr>
<tr><td>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td><td><u>-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 110,000천원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 210,000천원</u></td><td>국50,
시25,
군(구)25</td></tr>
</table>
</td>
<td>2018.
1. 1.
적용</td>
</tr>
<tr>
<td>2.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td>
<td><u>2.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u>
<u>나. 2017년도 추진계획</u>

(생략)</td>
<td><u>2.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u>
<u>나. 2018년도 추진계획</u>
<u>❍ 신규선정 : 50개소
※ 연도별 개소수(누계) : 2016년 10 → 2017년 50 → 2018년 100
❍사업예산 : 2,233백만원(시 1,219, 구 1,014)
❍ 선정계획</u></td>
<td>2018.
1. 1.
적용</td>
</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비고</th></tr>
<tr>
<td></td>
<td>다. 사업예산
(생략)

라. 기타사항
표 (생략)
○ 〈신설〉</td>
<td>- 선정대상 : 정원 39인 이하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
- 선정절차 : 공고 → 서류접수(군.구) → 1차 서류심사(군.구) → 2차 서류 심사(시) → 평가 및 선정(시)
※ 대상선정요건, 평가절차, 선정후 운영기준 별도 마련, 세부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제외 :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 등
- 선정기준 : 선정요건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 : 신규선정 어린이집 4,000천원/개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2,140천원/월

다. 주요 운영기준
○ 교사 대 아동 비율
- 대 상 반 : 영아반 2개반 이상
- 영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
<table><tr><th>구 분</th><th>0세반</th><th>1세반</th><th>혼합반</th><th>비고</th></tr><tr><td>일 반</td><td>1 : 3</td><td>1 : 5</td><td rowspan="2">대상 아님</td><td></td></tr><tr><td>인 천 형</td><td>1 : 2</td><td>1 : 4</td><td></td></tr></table>※ 돌봄 비율을 낮춘 0세반은 1개반 이상 편성 의무
※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반 담임교사는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함 [지정취소 요건]
※ 기타반중 1세반, 1~2세 혼합반은 탄력반을 편성할 수 없음[지정취소 요건]
○ 인천형반 지정·운영
- 매년 신학기 시작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시 인천형 반 지정
- 인천형반 변경지정시 운영위원회 사전보고 및 군.구 사전승인 확행
(미이행시 변경전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 시스템 정비
(1) 정비위치 : 보육통합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반관리
(2) 기관별 조치사항
(가) 어린이집 : 반명입력(예 : ○★♣반(인천형))
(나) 군구
① 조치사항 : 인천형반 정원 조정
② 조정방법 : '어린이집 목록에서 해당어린이집 검색
→ 인천형 어린이집의 '*반정원' 더블클릭
→ 인천형 인원에 맞게 정원입력(0세반 2, 1세반 4)
(3) 정비시기 : 사유 발생시

라. 기타사항
표 〈삭제〉
○ 인천형어린이집 운영기준(부록 P 201) 참조</td>
<td></td>
</tr>
<tr><td colspan="4">Ⅷ. 어린이집 품질 개선</td></tr>
</table>

사업명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3. 투명한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운영	**다. 2018년 추진계획** 1 (생략) 2 급식재료 공동구매 공급업체 다양화 : 5개 업체 이상 ❍ 구별 급식재료 공급업체 입찰 등 선정시 다수 공급업체 선정 - 구별 지역업체 1개소 이상 참여 유도 - 공급업체수를 5개 업체 미만인 구는 확대 선정 노력 ❍ 참여업체 다양화로 가격경쟁 및 품질서비스 경쟁 유도 - 어린이집(소비자) 선택의 범위확대 및 만족도 증대 - <신설> - 참여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가격 및 품질 향상 제고 노력 3 지도점검시 지적된 ---- (생략) 4 공동구매 제공업체 ----(생략)	**다. 2018년 추진계획** <삭제> 1 급식재료 공동구매 공급업체 다양화 : 군·구별 20~30개 업체 이상 ❍ 구별 급식재료 공급업체 입찰 등 선정시 다수 공급업체 선정 - 구별 지역업체 1개소 이상 참여 유도 - 기존 업체외 신규업체(업수) 지정 확충 운영, 단품업체, 동일업체 대리점 등을 확대 지정하여 어린이집의 선택권 및 소상공인의 참여권 보장 ❍ 참여업체 다양화로 가격경쟁 및 품질서비스 경쟁 유도 - 어린이집(소비자) 선택의 범위확대 및 만족도 증대 - 단품취급 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 참여 확대 - 참여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가격 및 품질향상 제고 노력 2 지도점검시 지적된 ----(현행과 같음) 3 공동구매 제공업체 ----(현행과 같음)	2018. 1. 1. 적용
4. 열린어린이집 확산 및 활성화 추진	**다. 추진계획** ❍ **<신설>**	**다. 추진계획** ❍ 활성화 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지방자치단체형 5점, 우수형 10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2점) 부여 - 보조교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체조리사 : 대체조리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17.3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17.7월~),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 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2018. 1. 1. 적용

사업명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Ⅸ.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			
1.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나. 현 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씨티은행 2층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쉼터, 키즈놀이방 등 ❍ 종 사 자 : 16명(센터장 1, 팀장1, 보육전문요원 3, 행정원 1, 기타 10) ❍ 위탁운영자 : (사)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간)	**나. 현 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체육관 내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쉼터, 키즈놀이방 등 ❍ 종 사 자 : 16명(센터장 1, 팀장1, 보육전문요원 3, 행정원 1, 기타 10) ❍ 위탁운영자 : (사)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년간)	2018. 1. 1. 적용
2.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5) 장난감 월드 종사자** ❍ 운영인력 근무시간 - 화 ~ 토요일 10:00~19:00 - 점심시간 13:00~14:00 ※〈신설〉 ❍ 운영인력 급여체계 - 점장(또는 팀장) : 월1,828,800원(중식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퇴직적립금 별도 - 일반직 : 월1,489,200원(중식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퇴직적립금 별도 ※ 2017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보육교사 5호봉, 조리원 5호봉 수준 - 아르바이트 : 시급 6,470원지급, 1주만근시 주휴수당 1일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적용) ⇒ (목욕비)반납된 장난감의 소독작업에 복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 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목욕비를 1일당 6,16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목욕비) 행정자치부 '16.12월 개인서비스 품목 평균 금액 **6) 회원가입** • 회원가입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내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 • 〈신설〉 • 〈신설〉	**5) 장난감 월드 종사자** ❍ 운영인력 근무시간 - 화 ~ 토요일 10:00~19:00 - 점심시간 13:00~14:00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점심식사를 포함한 직원의 휴식권 차원에서 점심시간에는 장난감월드 대여점 개방하지 않음. ❍ 운영인력 급여체계 - 점장(또는 팀장) : 월1,865,300원(중식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퇴직적립금 별도 - 일반직 : 월1,653,000원(중식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퇴직적립금 별도 ※ 2018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보육교사 5호봉, 조리원 5호봉 수준 - 아르바이트 : 시급 7,530원지급, 1주만근시 주휴수당 1일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적용) ⇒ (목욕비)반납된 장난감의 소독작업에 복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 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목욕비를 1일당 6,16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목욕비) 행정자치부 '17.12월 개인서비스 품목 평균 금액 **6) 회원가입** • 회원가입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내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 (대여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후 신청인에게 서류 반환)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연회비 면제대상자의 경우는 회원자격 유지기간으로 적용함) • 회원기간 연장	2018. 1. 1. 적용

사업명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 연회비 안내 - 연회비 : 연회비는 ---(생략) ○ <신설> ○ <신설> **7) 대여 및 반납, 배상** • 대여 - 회원 당 장난감, 도서, ---(생략) - 회원 당 장난감2개, 도서3권, 영상자료 2개를 대여할 수 있으며 월 4회 까지 이용가능. **10) 장난감월드 운영관리업무 전산화 등**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종합정보시스템(DB) 총괄은 ---- (생략) - 대여관리, 회원관리, ---(생략) ○ 대여관리 : (생략) ○ 회원관리 : 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회원카드번호, 연회비, 최종납부일 및 가입일 **12) 기타 관리 사항** • 회원가입서류 및 회원정보파일의 보관 및 폐기 - 회원가입서류는 2년간 보관 후 폐기 - 운영관리 DB시스템에 저장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 후 1년 경과시 삭제 • 〈신설〉	- 기존 회원이 회원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연회비 안내 - 연회비 : 연회비는 ---(현행과 같음) ○ 회원이 주거지 이전(이사) 사유로 기존 대여점 탈퇴후 신규 대여점으로 대여점 등록이 변동될 시 기존 대여점의 잔여 이용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대여점에서는 확인후 서류 반환) ○ 카드결제기 설치 지점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7) 대여 및 반납, 배상** • 대여 - 회원 당 장난감, 도서, ---(현행과 같음) - 회원 당 장난감2개, 도서3권, 영상자료2개를 대여할 수 있으며 월 4회 까지 이용가능. 단, 다자녀 가정(셋째아 이상)은 8개까지 (장난감 3개, 도서 3권, 영상자료 2개)대여할 수 있으며 월 4회까지 이용가능 **10) 장난감월드 운영관리업무 전산화 등**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종합정보시스템(DB) 총괄은 ---- (현행과 같음) - 대여관리, 회원관리, ---(현행과 같음) ○ 대여관리 : (현행과 같음) ○ 회원관리 : 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회원카드번호, 연회비, 최종납부일 및 가입일, 회원자녀(영유아)의 성별 **12) 기타 관리 사항** • 회원가입서류 및 회원정보파일의 보관 및 폐기 - 회원가입서류는 2년간, 탈퇴서류는 1년간 보관후 폐기 - 운영관리 DB시스템에 저장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 후 1년 경과시 삭제 (회원 유지기간 종료후 재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탈퇴의사로 간주한다.) • 대여점 점장은 이용자 및 대여점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비상탈출구를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화재발생 등 비상탈출훈련을 실시하여 대여점 이용자 및 직원이 평소에 비상탈출 이동 동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명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Ⅹ. 부 록			
8. 서 식	<서식> ① 필요경비 부모동의서 ①-1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신설> ⑫ 양도양수서 ※ 신분증 확인 첨부	<서식> 삭제 <서식> ① 부모동의 및 조사서 ⑫ 양도양수서 ※ 삭제	2018. 1. 1. 적용